

## 시장경쟁 - 자유주의와 Rawls 정의론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I. 머리말

시장경제에서 개인이 벌이는 경제활동은 소득을 취득하는 활동과 지출하는 활동으로 대별된다. 남을 위해 일함으로써 소득을 취득하고 이 소득으로 다른 사람을 부려서 내 필요를 충족한다. 즉 내 필요를 충족하려고 남을 돕는데 이 구도의 현실적 모습은 소득의 취득과 지출이다. 남을 도와 소득을 얻고 이 소득으로 남의 도움을 구하니 소득의 취득과 지출은 서로 다르면서도 항상 공존한다. 소득 취득이 없으면 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출을 금지하면 취득 유인도 소멸한다.

소득의 취득과 지출을 이끄는 힘은 시장경제를 이끄는 기본 동력이다. 개인은 상품의 생산 판매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을 지출하여 상품을 구매 사용한다. 많이 벌면 그만큼 더 많이 살 수 있으므로 높은 소득을 주는 일자리마다 사람들이 모인다. 동시에 가격이 저렴한 좋은 상품도 고객을 끌어들인다. 좋은 일자리나 상품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많지 않으므로 경쟁이 불가피하다. 구직자 간 경쟁은 해당 일자리 보수를 낮추고 구매 경쟁자 간 경쟁은 상품값을 올린다. 경쟁자들이 자신의 몫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상품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보수가 너무 낮아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나 값이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는 상품은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다. 인력 확보를 원하는 고용주 간 경쟁은 다투어 보수를 올리고, 판매 확대를 겨냥한 판매자 간 경쟁은 가격을 낮추는데 여기서도 경쟁자들의 몫이 줄어든다는 점은 변함없다. 시장은 모자랄 때마다 경쟁을 촉발하여 그 공급은 늘리면서 수요는 줄이도록 이끄는 소득 유인을 준다. 거꾸로 남아돌면 역시 소득 구조를 바꾸어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도록 경쟁을 촉발한다.

경쟁은 개인의 이기적 동기를 자극하여 시장 스스로 사회적 과부족을 해소하도록 유도한다. 과다 또는 과소 생산을 유발하는 자원배분을 방지하지 않고 시정한다는 면에서 경쟁의 효율성은 널리 잘 알려진 터이다. 그런데 경쟁이 효율성을 창달하는 기능의 핵심은 소득분배 조정인데 이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 문헌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 필자의 한정된 식견으로 볼 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경쟁이 소득분배 조정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과제는 방대하다. 이 글에서는 공동협력적 생산부문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한정하여 이 문제를 살피기로 한다. 개인 단독으로는 얻기 힘든 성과도 공동협력을 펼치면 성취해낸다. 그런데 공동협력에서 참여자의 역할 수행은 각자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도록 요구한

다. 시장경제는 개인이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협력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를 각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경제적 자유를 허용한다. 협력은 단독행동과는 달리 파트너와 함께 수행하는 공동행동이다. 한 개인의 결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협력 참여자들이 협의하고 협상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성사된다. 참여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서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시장경제의 개인은 협력에 참여하면서 다양하게 경쟁한다. 공동협력적 생산부문의 경쟁은 특성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생산활동에 요긴한 신 자원, 혁신 기술, 그리고 남에게 없는 탁월한 재능 등을 취득하는 경쟁이다. 취득 목표물은 현재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므로 이 경쟁의 승자는 보통 선점자 취득(finders-keepers)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불확정적 무주물(無主物)을 남 먼저 취득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탐사, 연구 개발, 그리고 교육 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쟁을 기본경쟁(primary competition)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취득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성공이지만 실패하면 낭비로 비치기 쉬운데 현실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다. 그러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사는 無정보 상태에서 출발한다. 실패가 두려워 탐사 활동을 제한한다면 관련 정보를 취득 추적하기 어렵다. 또 시각과 방향이 다양할수록 취득하는 정보의 내용도 풍부하다. 각자 개성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도록 탐사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각자 얻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면 미지의 세계는 더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정보 공유가 개인별 성과를 침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자유화는 역량 개발의 기본경쟁을 활성화한다. 그에 따라서 성공적 혁신은 일상화하고 경제 내 개인별 역량 분포도 끊임없이 새롭게 변해간다.

기본경쟁이 결정한 역량의 수준과 그 분포는 사회적 분업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시장경제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협상을 통해 공동협력의 구성원을 선별하고 협력 조건을 결정하도록 맡긴다. 개인은 협력 파트너 및 협력 조건을 결정할 자유를 누리지만 협력은 참여자들이 협상을 타결해야 실현된다. 공동협력의 성과를 크게 높이는 자원, 기술, 그리고 재능 등 탁월한 역량을 갖춘 개인일수록 협력 파트너로 인기가 높다. 이 개인과 협력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경쟁이 불가피하다. 경쟁을 벌이는 쪽은 낙점을 받기 위해서 협상 과정에서 인기 파트너에게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족한 우수 역량과 협력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쟁이 공동협력적 생산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유형의 경쟁인데 이것을 이차경쟁(secondary competition)이라고 부르자.

개별 역량의 분포는 기본경쟁의 결과다. 이것을 공동협력으로 묶어서 사회적 분업으로 조성하는 동력은 이차경쟁이다. 이차경쟁은 초과수요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호가 경쟁처럼 소위 부족이 유발하는 경쟁이다. 협상에서 경쟁에 휘말린 쪽은 우수 역량에게 더 많이 양보하므로 이차경쟁은 우수 역량의 개인에게 더 큰 소득을 몰아준다. 우

수 역량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우수 역량을 취득하려는 기본경쟁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우수 역량을 취득한 개인의 숫자가 늘어나서 사회적 부족 현상을 타개하면 이차경쟁의 강도를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초과수요가 호가경쟁으로 상품 가격을 올림으로써 스스로 부족의 폭을 줄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계약의 자유(freedom of contract)는 협력 상대방을 선택하고 그와 협력조건을 결정할 협상의 자유로서 이차경쟁의 모태다. 계약의 자유는 곧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파트너를 따를 자유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정부 규제의 명분은 안전보장, 환경보호, 그리고 약자 보호 등이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계약의 자유 가운데 협력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분업의 구조와 작동을 조정한다. 담합금지, 최저임금제, 주52시간 노동, 그리고 고용보호법 등 약자 보호 규제는 특히 협력 조건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협상은 이차경쟁의 무대로서 경쟁의 승자는 협상 결과가 결정한다. 타결된 협상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계약이다. 정부는 계약의 자유를 규율함으로써 시장분업의 형성과 경쟁의 작동을 조절한다. 계약의 자유에 대한 규율은 사람들의 노력을 창의 혁신으로 이끌 수도 있고 거꾸로 무임승차의 퇴영적 행태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 글은 시장경쟁, 특히 이차경쟁을 건전하게 창달하는 규율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주의와 J.롤즈의 비판을 함께 고찰한다.

이하에서 시장경쟁은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이차경쟁을 뜻한다. 시장경쟁을 단속하는 틀은 다양한 법체계다. 경쟁법, 노동법, 그리고 하도급법 등은 해당 분야 경쟁질서의 기준으로서 그 내용은 그 사회가 허용하는 자유와 소유, 특히 계약의 자유와 무관하지 않다. 유럽연합(EU)은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사전에 대기업의 행동을 간섭하는데 미국은 불공정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날 때만 단속한다. 고용보호법도 미국은 정리해고가 쉽지만, 유럽대륙은 어렵다.

이 글의 목적은 바람직한 시장경쟁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경쟁의 모태가 계약의 자유인만큼 먼저 자유주의부터 검토할 것이다. 자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쟁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그에 대한 대표적 비판으로 J.롤즈의 정의론을 살필 것이다. 이 논의를 토대로 단합금지의 자유경쟁에 보완적 사회복지제도를 추가하면 건강한 시장경제가 가능하다는 공리주의적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 II. 자유의 본질과 제한

### 1. 개별성과 사회성 - 사법 판단과 주변 반응

자유는 각자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결(self-determination)의 권리

다. 자결권을 잃은 삶은 노예나 다름없다. 자유 상태의 개인은 주변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단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므로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만 생각한 행동은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돕기도 한다. 그러므로 개인행동은 다양한 주변 반응을 촉발하는데 때로는 강한 반발로 좌절당하기도 한다.

개인이 자유를 행사할 때 주목적은 자신만의 독자적 가치, 즉 개별성(individuality)을 실현하는 일이고 주변 배려는 부차적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개별성들은 수시로 충돌하는데 분쟁에 휘말리면 개별성 실현이 어렵다. 각 개별성이 사회적 수용성, 즉 사회성(sociability)을 얻어야 분쟁 없이 공존할 수 있다. 개별성에 사회성을 부여하는 기준은 곧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기준이다.

개별성에 대한 사회성은 결국 국가 권력이 판단한다고 보는 시각은 충돌 당사자들이 스스로 양보하는 해법보다는 타당한 외부적 정의기준을 탐구해 왔다. 현대의 문명국들이 갖춘 사법체계는 대체로 이 노력의 결실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법 판단도 많은 경우 판결 이전에 합의를 종용한다. 당사자 양보에 의한 분쟁 해결이 힘은 들어도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는 개별성 간 충돌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의하여 결자해지하거나 사법 판단과 같은 외부 권위가 개입하여 정의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방법으로 풀어간다. 분쟁 해소와 정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사회성 부여 기준의 양대 축이다.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에게는 사회성 부여 기준 자체가 외부강제다. 외부강제가 개인 행동을 사사건건 간섭하면 자유 자체가 부정당한다. 반대로 모든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개별성 간 충돌은 사회생활을 분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간다. 국가 권력의 이상적 조치는 개인을 ‘자유롭도록 강제(forced to be free)’(Rousseau, 1762)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강제가 이상적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경쟁적 해명이 난무할 뿐이다.

## 2. 자유의 우선순위와 개별성 간 절충

사법 판단은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개별성별 사회성을 인정 또는 부정하는 판정 방식인데 그 형식은 특정 자유를 우대 또는 제한하는 판결이다. 심야 파티 불허의 판결은 소음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안면의 자유를 보호한다. 판례를 따르는 사법 판단은 다른 사안에서도 안면의 자유를 소음의 자유보다 더 우대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한다. 즉 사회의 법체계가 안면의 자유를 소음의 자유보다 더 존중한다. 사법 판단은 개인 간 분쟁에서 자유 간 충돌을 추상하고 법으로 정한 자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정당하면 자유 제한도 정당하다. 정의론은 자유 충돌의 연구에서 자유의 우선순위를 중요한 주제로 삼는다(Rawls, 1999).

그런데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만 절충에 성공하면 각자의 개별성은 분쟁을 피하므로 사회성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자유 간 우선순위 아닌 절충

의 정당성을 더 중시한다. 당사자 만장일치의 합의는 절충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데 단 합의가 자발적이어야 한다. 즉 합의 과정에서 강요, 위조, 그리고 도둑질과 같은 부당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의 역할은 우선순위에 따른 자유 제한이 아니라 강요 등 부당 행위를 단속하는 일만으로 충분하다(Nozick, 1999).

당사자 절충에 의한 사회성 확보의 발상은 사회성을 주변 반응으로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서로 적대적인 개별성도 당사자들이 수용조건 절충에 합의한다면 스스로 분쟁을 극복하고 서로 사회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절충이 항상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므로 절충 실패에 대비한 사법 판단은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합의에 실패하면 법적 판결로 간다. 그러므로 법적 판단과 철저히 상극인 내용의 절충은 대체로 불가능하다. 절충 내용이 법적 판결과 반드시 같지는 않으나 사법 판단과 당사자 간 절충은 이렇게 공존한다. 민주적 입법절차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제·개정하므로 법적 처리와 절충이 본질적 근거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 등은 서로 대등한 별개의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사회가 복수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 이들 간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Berlin, 1958, pp.3-4; Rawls, 1999, pp.8-9). 그러나 그 구도는 대등한 가치 간의 균형이 아니다. 예컨대 자유는 정의가 설정한 기준에 합당한 것만 허용된다.<sup>1)</sup> 정의기준이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을 갖출 수는 있되 정의기준에 어긋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정의는 자유 간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유 위에 균림한다.

자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억압 철폐에서 자유의 질적 수준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유 허용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고찰해 왔다. 물리력이나 위계(僞計) 등 강제력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억압할 자유도 여러 자유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외부강제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강자는 이 자유를 독점하고 약자의 자유를 유린해 왔다. 현대에도 공권력은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만 허용되는 강제력으로서 사법 판단을 집행하는 힘의 원천인 외부강제다.

### 3. 자유주의

자유는 창달은 일반 개인이 타인에게 외부강제를 자행할 자유를 일절 금지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금지만 수용하고 다른 모든 자유를 허용하는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에서 특정 가치를 지향하도록 요구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에 이르기까지 자유 제한의 형태는 다양하다(Berlin, 1958). 소극적 자유는 외부강제만 금지할 뿐 모든 행동의 결정을 각 당사자에게 맡긴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품격을 높이면서 남도 배려하도록 권장하지도 않는다. 타인과 충돌하지 않는 자유 행사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충돌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상호 절충에 성

1) 정의의 적용을 면제받는 온정과 포용 정도가 정의와 대등한 가치일 것이다.

공하여 분쟁을 피한다면 해당 개별성은 그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외부강제의 금지 이외에 특정한 규범을 추가로 지켜야 자유를 옹계 행사한다고 본다. 서로 충돌하지 않더라도 이 규범에 어긋나는 개별성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자유롭도록 강제’한다.

모든 자유화는 억압 철폐, 즉 소극적 자유의 쟁취에서 출발하는데 지향하는 가치별로 서로 다른 적극적 자유로 분화한다. 자유 억압 요인에 대한 인식이 저마다 달라서 분화과정은 천차만별하고 그 결과 서로 너무도 달라진 ‘자유주의’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예컨대 생산자산의 사유화는 자유창달에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억압의 근원이라는 주장이 ‘자유주의’의 이름 아래 함께 공존한다. 진보를 뜻하는 ‘liberal’은 현 질서가 자유를 존중할 때는 자유 제한을 요구하는 반(反)자유적 시각을 지칭한다. 이 모든 시각을 한데 묶어서 자유주의로 분류하는 일은 무의미하고 혼란만 부추긴다. 자유주의라는 명칭은 다양한 개별성을 최대한 관대하게 포용한다는 내용으로 끝내고, 자유주의가 관용하는 개별성이라도 더 숭고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이유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이념은 그 가치에 걸맞게 자유주의 아닌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모든 개별성을 그대로 허용하면 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회는 자유를 특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체제도 모두가 납득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자유제한을 수용한다. 우선 모든 자유의 적인 외부강제의 자유를 금지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제1원칙은 ‘강제금지원칙(no coercion principle)’이다. 제2원칙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유행사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의원칙(objection principle)’이라고 명명하자. 이의원칙은 분쟁을 직접 일으키지 않는 개별성은 모두 포용하자고 제안한다.

제2원칙은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 자유행사에 대한 제안이 아니다. 외부강제성 자유행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강제금지원칙’이 수용한다. 정상적 자유행사를 강제로 방해할 의도의 외부강제성 이의제기는 같은 원칙에 따라서 기각된다. 그러나 외부강제성이 아닌 이의제기라면 별도의 처리 지침이 필요하다. 이의제기는 개별성 간 충돌인데 개별성을 존중하는 해결 방식으로는 일단 당사자 간 절충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당사자들이 수용하기로 절충하면 그 개별성에는 사회성을 부여하는 ‘절충원칙(compromise principle)’은 자유주의의 제3원칙이다.

어떤 자유행사에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당사자들이 절충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애초에 이의제기가 없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즉 절충원칙은 이의원칙의 기초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절충에 실패하면 당사자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사회성 부여도 실패한다. 개별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용은 당사자 절충이 성공하는 선에서 끝나고, 절충이 실패하는 충돌에 대해서는 외부적 정의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강제금지원칙, 이의원칙, 그리고 절충원칙 등 3대원칙을 기본으로 삼는

이념을 자유주의(liberalism)로 부르기로 한다. 이 정의(定義)의 자유주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개별성은 그대로 허용하고 충돌하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 역시 관련 개별성에 사회성을 부여한다. 절충이 실패할 때의 처리기준은 자유주의 3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좋다. 단순하게 말하여 강제금지원칙만 준수하면서 내외적으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율은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자유주의다.

마침 J.S.밀의 위해원칙(harm principle)은 남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행사는 그대로 허용하자고 제안한다(Mill, 1859). 가해(加害)와 이의제기 유발은 서로 다르다. 예컨대 이웃의 방탕한 사생활로 직접 피해당하지는 않으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이의원칙의 자유 허용 기준은 위해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위해원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위해원칙이 허용하더라도 법적 도덕주의와 후원주의에 저촉되거나, 불쾌·모욕 유발과 간이구조의무 소홀 등의 자유행사는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오병선, 2019). 간통, 동성애, 안락사, 자살, 그리고 음란물 유통 등의 행위가 외부 제3자들에게는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제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 글의 자유주의는 제재의견이 제기되면 허용하거나 제재하는 대신 절충원칙에 회부하자고 제안한다. 당사자 절충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허용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자유주의 3원칙과 모순되지 않는 다른 정의기준으로 처리한다.

자유주의 3원칙은 이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수용에 합의한 개별성에는 사회성을 부여하는 불간섭의 자세를 유지하지만 합의하지 못한 개별성에 대해서는 국가 간섭을 수용한다. 그러므로 이 정의는 특정 가치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모든 당사자가 수용하는 개별성을 거부하는 적극적 자유는 자유주의로 분류되지 않는다.

#### 4. 공동협력과 당사자 절충 - 자발적 자유 절제

개별성을 실현하는 개인행동은 단독행동 또는 공동협력으로 나타난다. 성공한 당사자 절충은 그 자체로 이미 단독행동을 넘어선 공동협력이다. 당사자들은 절충에 성공할 경우 서로 수용하는 선에서 양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각자 자신의 개별성에 대한 사회성을 확보한다.

능력이 모자라서 단독적으로는 개별성을 원하는 만큼 실현하지 못하는 개인도 주변의 물리적 도움을 원한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강제금지원칙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없다. 이웃이 호의로 나를 도울 수도 있지만 이러한 도움은 일회성 수준이다. 필요할 때마다 남의 도움을 얻으려면 나도 그때그때 남을 도와야 한다.

이러한 상호적 공동협력은 개별성에 제기된 주변의 반대와 타협하는 당사자 절충과는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각자 단독행동으로는 얻지 못할 개별성 실현을 위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구도는 공통적이다. 관련자들은 서로 주고받을 것에 대해 협

상하고 절충이나 공동협력은 이 협상의 타결로 성사된다. 현대의 사회생활에서는 단독행동보다는 당사자 절충이나 공동협력을 통해서 펼쳐는 개인행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하에서는 절충과 공동협력을 같은 뜻으로 혼용하기로 한다.

자유주의는 3원칙에 부합하는 공동협력은 모두 그대로 허용한다. 즉 공동협력에 참여하는 개별성 간 사회성과 외부 제3자 관련 사회성을 모두 3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외부 제3자 관련 사회성 문제부터 살펴보자. 몇 사람이 당사자 절충에 성공하여 펼쳐는 집단행동에 주변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유주의는 이의원칙에 따라서 그 행동을 허용한다. 만약 다른 제3자가 이 협력에 이의를 제기해오면 협력체와 제3자 간 새로운 절충이 필요하고 절충원칙은 이 절충에 성공한 공동협력을 허용한다. 강제금지원칙은 외부강제성 협력이나 이의제기를 금지한다.

이제 협력에 참여하는 개별성 간 사회성 문제를 살펴보자.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에서 도움 제공은 참여자들이 각자의 자유를 특정하게 포기하는 행동이다. 강제금지원칙은 이 자유 포기가 자발적일 것을 요구한다. 자유절제를 강요하는데도 참여해야 하고 강요당할 때 이것을 피해 이탈하지도 못한다면 그 협력은 외부강제다. 그러므로 참여와 이탈의 자유는 자발적 자유절제의 선결조건이다.

협력상대와 협력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협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참여와 이탈의 자유는 협력상대를 선택하고 참여자 간 서로 자유포기를 제안하고 요구할, 즉 협상할 자유로 이어진다. 참여와 이탈의 자유, 협력상대 선택의 자유, 그리고 협력조건 협상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공동협력의 기본 자유로서 함께 모여서 계약의 자유를 이룬다. 모든 참여자가 계약의 자유를 누리면서 협상을 타결하고 벌이는 공동협력에는 강제와 이의제기가 없고 협상 타결은 절충의 성공을 뜻하여 자유주의의 3원칙을 모두 충족하므로 각 참여자의 개별성은 그대로 허용된다.

협력조건 협상은 각자 자발적 양보를 통하여 다른 참여자들의 양보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얼핏 자유포기처럼 보이지만 이 절제의 본질은 절충이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각자의 개별성 실현을 겨냥하는 지능적 자유행사다. 노예처럼 자발적으로 양보할 자유나 소유 물자가 없는 개인은 자유주의적 공동협력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즉 자유인의 자율적 공동협력은 자유와 사적 소유의 제도적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시장경제의 개인생활은 자발적 자유절제의 전형이다. 현금 2만 원에 사과 한 상자를 사고파는 행위는 사는 사람이 그 현금을 다른 데 쓸 자유를 절제하고 파는 사람은 사과를 달리 쓸 자유를 절제하였기에 가능하다. 근무시간 중에는 사적으로 활동할 자유를 절제해야 직장 일에 몰두하고 고용주는 급여만큼의 현금을 다른 데 쓸 자유를 절제해야 직원을 잡아둘 수 있다.

이처럼 절충과 협력의 본질은 자유와 물적 소유를 주고받는 거래다. 그런데 합의단계의 절충은 계약으로서 거래의 약속일뿐이고 실제 협력은 이 거래가 약속대로 실현될 때 성사된다. 양도할 수 없는 자유를 양보한다거나 내 것이 아닌 물자를 제공하기



로 하는 거래의 약속은 실현될 수 없는 속임수다. 약속이 속임수 아닌 진실이더라도 한 참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참여자에게 그 약속은 역시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공동협력을 창달하려면 이러한 속임수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해야 한다.

공양미 삼백 석에 제물이 되는 효녀 심청의 행위는 생존권을 양도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현대의 법체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양도 불가능한 자유를 양보하기로 하는 계약은 진실성이 없으므로 이행할 수도 없다. 자유의 양도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상세하게 살필 것이다. 물자 제공의 거래에서는 그 물자의 소유권이 적법해야 한다. 누구의 소유물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취득하고 소유주가 없는 발상이나 물자는 아무도 해치지 않으면서 취득한다면 취득자가 피취득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보유하고 보는 '권리이론(entitlement theory)'은 이 도덕적 권리를 소유권으로 인정한다(Nozick, 1999). 양도 가능한 자유와 정당한 소유의 인증과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가 법·제도에 양도 불가능한 자유와 사적 소유를 명확하게 설정해주면 진실성을 갖춘 계약은 판별해낼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은 진실성을 갖추었더라도 결국 약속일뿐이다. 이행되지 않는 계약은 도움을 받기만 하고 제공할 도움은 거부하는 속임수와 같다. 게임이론의 민속정리(folk theorem)는 반복적 공동협력의 참여자가 계약을 줄곧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조건을 구명한다. 이 정리에 따르면 어느 순간의 계약 불이행은 그 시점에서는 큰 '순간 이익'을 주지만 이후 공동협력에서 배제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이 더 크면 감히 계약을 위반하지 못한다. 현실의 다양한 자유 공동협력은 민속정리가 타당함을 반영한다. 그래도 계약 위반은 강제력 발동으로라도 제재하는 대비는 필요하다.

각자 도움을 주고받는 구도는 같아도 공동협력은 매우 중요한 점에서 당사자 절충과 다르다. 성사되지 않은 공동협력은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개별성 간 절충의 실패는 곧 본격적 분쟁을 뜻하고 결국 송사로까지 번진다. 예컨대 동성애나 신홍종교의 이단 시비는 끝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기 일쑤이므로 정부는 별도 기준을 강제하여 분쟁을 막는다. 이러한 개별성 간 절충 실패 문제는 이 글의 주제인 공동협력 체제의 시장경쟁과는 무관하다.

현실의 공동협력이 모두 자유주의 3원칙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후보자가 공약으로 표를 구하고 유권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공약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공동협력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표를 구하는 공동협력은 그렇지 않다. 공약을 보고 투표하거나 향응을 받고 투표하거나 자유로운 협력임에는 다를 바 없고 자유 3원칙에 부합하는데 전자는 허용하면서 후자는 금지한다. 자유 이외에 다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 III. 공동협력의 자유와 경쟁

#### 1. 공동협력 기회의 경쟁

공동협력이 활발한 사회에서 협력 실적이 누적되면 협력 파트너에 대한 평판은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예컨대 甲과 협력하면 성공하고 乙과 협력하면 고생하는데 이 사실이 평판으로 유통되면 많은 사람이 甲과의 협력을 원하므로 경쟁이 벌어진다. 협력 파트너를 향한 경쟁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직능 A와 직능 B가 협력하면 함께 소득 10을 얻고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하면 각각 소득 2를 얻는 데 그친다. 같은 직능끼리는 2인1조의 협력팀을 꾸려 일해도 개별 활동시 소득의 합 4밖에 얻지 못한다. 한 개인은 한 번에 한 가지 직능만 발휘할 수 있고 공동협력과 개별 활동을 동시에 겸하지는 못한다고 하자.

각각 직능 A와 B를 갖춘 2인 사회에서 출발하자. 이들은 당연히 공동협력에 종사하는데 협력의 순소득은 각자의 기회비용을 차감한  $6(=10-4)$ 이다. 게임이론의 'Nash 협상해(Nash bargaining solution)'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 순소득 6을 3씩 나눈다. 협상으로 합의한 분배 몫 3과 기회비용 2를 합친 5는 각자의 개별 소득이고, 이것을 숫자 조합으로 표시하면 최종 소득분배는 (5,5)다.

이제 직능 B가 한 명 더 나타나서 3인 사회가 된다고 하자. 새로운 B가 홀로 일하면 소득 2를 얻지만, A와 협력하는 B는 5를 벌고 있다. 남아도는 직능 B 두 사람은 모자라는 직능 A를 파트너로 모시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새로 온 B는 A에게 자기와 협력하면 A에게 6을 주고 자기는 4만 가지겠다고 제의할 수 있고 A는 이 제의에 솔깃해진다. A가 새로 온 B의 제의에 응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기존 파트너 B가 자기는 3만 가질 테니 A에게 7을 가지라고 나선다. 거꾸로 A가 각 B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행동은 계약의 자유가 제한 없이 허용될 때 가능하다.

참여와 이탈의 자유는 A가 현재의 파트너 B를 버리고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외부 B와 새로운 협력을 벌일 수 있게 만든다. A의 전략은 두 B 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A는 8을 얻고 B는 협력하던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각각 2를 얻는 결과로 돌아가므로 2인 공동협력의 소득분배 계약은 (8,2)로 바뀐다. (8,2)가 아닌 소득분배는 어느 것도 균형이 아님은 쉽게 증명된다. 만약 새로 나타난 직능이 A라면 경쟁은 소득분배 계약을 (2,8)로 결정한다. 다음 표는 이 결과를 요약한다.

사회구성	생산체제	소득분배
A, B	(A,B)	(5,5)
A, B, B	(A,B), B	(8,2), 2
A, A, B	A, (A,B)	2, (2,8)

공동협력 생산의 물리적 구조는 경쟁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같다. 즉 경쟁이 있거나 없거나 각 직능의 생산기여도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소득분배는 (5,5)이다가, B가 한 사람 더 나타나서 경쟁이 발생하면 (8,2), 그리고 새로 나타난 사람이 B 아닌 A라면 (2,8)로 바뀐다. 공동협력에서 참여자들의 일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에도 소득분배는 달라진다. 즉 시장경제에서 공동협력의 직능별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직능별 생산기여도가 아니라 희소직능의 파트너 되기를 원하는 과다직능 간 경쟁이다.

## 2. 계약의 자유와 경쟁

공동협력의 참여 희망자는 누구나 자신이 주는 도움(직무 부담)은 적으면서 받는 도움(분배 몫)은 크기를 바란다. 그러나 협력은 거꾸로 절제는 많이 하고 몫은 작게 요구해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원하는 몫이 클수록 더 많은 자유 절제를 감수해야 하는데 큰 몫의 기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므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경쟁자들은 각자 더 많은 자유포기를 제안하면서 경쟁에서 이기려 한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이기는 입찰경쟁의 승리는 자유 아닌 현금의 포기가 결정하나 현금의 포기도 결국 그만큼의 현금을 다른 용도에 쓸 자유의 포기다.

계약의 자유는 계약하고 파기할 자유는 물론이고 계약 상대와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자유까지 망라한다. 계약의 체결과 파기는 협력 참여와 이탈을 뜻하고 계약조건 결정의 자유는 자유를 얼마나 절제 포기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계약의 자유는 곧 절충을 통한 자유행사의 바탕이고 동시에 경쟁의 자유이기도 하다. 계약의 자유는 공동협력 단위별로 참여 희망자가 부족하면 협력 단위 간 참여자 유치 경쟁, 그리고 넘치면 희망자 간 참여경쟁을 허용한다. 이 경쟁은 협력 단위마다 필요한 참여자를 확보하고 각 참여자 또한 모두 원하는 단위에 참여한 상태에 이르러야 그친다. 경제이론에서는 경쟁 소멸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는데 균형은 현재 관찰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현실경제의 동학이 끊임없이 지향하는 목표다. 각종 공동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속속 나타나서 사람들을 끌어가면 참여자를 빼앗긴 협력은 결국 소멸한다. 그 과정에서 경쟁은 끊임없이 경쟁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포기하도록 압박함으로써 희소직능의 소득을 높게 유지한다.

경쟁은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을 남보다 앞서서 차지하려는 전략 간의 힘겨룸이다. 내가 먼저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살벌하고 경쟁자들은 서로 적대적이다. 그러나 외부강제를 배제하는 자유주의의 틀 속에서 경쟁의 질서는 폭력적이 아니다. 이차적 경쟁에서는 경쟁 대상이 이미 누구의 소유물이고 소유주와 협상하여 이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경쟁의 승자다. 내 자유를 절제하고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 당신이 가진 그것은 내게 달라는 식의 협상에서 승자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고 '당신'은 더 많은 자유절

제로 ‘당신’에게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승자로 선택할 것이다.

특정 공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그 지위의 임명권을 가진 상위 공직자의 낙점을 받기 위하여 경쟁한다. 그러나 최종 낙점은 임명권자와의 협상에서 결정된다.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그리고 인맥 동원 등은 경쟁전략이기보다는 협상전략이다. 경쟁은 임명권자가 후보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임명하면 끝난다. 경쟁 대상의 소유주가 승자를 결정하는 구도와 마찬가지로이다.

세상에 아직 없는 것, 따라서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일차적 경쟁도 선점자취득(finders keepers) 원칙에 따라 승자를 결정한다. 경쟁은 경쟁자들 간 대결이지만 이들이 직접 서로 치고받지는 않는다. 각자 승자 결정권을 가진 개인과 협상하거나 승자 결정 원칙에 따라 노력하면서 승리를 추구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자유와 소유를 부당하게 침탈하는 탈법적 외부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승자 결정권을 가진 개인과의 협상에서 경쟁자의 협상전략은 ‘더 많은 자유포기’다. 발견/발명의 경쟁도 승리 가능성을 키우는 데 필요한 더 많은 탐사/탐색 노력은 그만큼 더 많은 자유포기를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시장경쟁은 ‘더 많은 자유포기’의 협상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쟁의 모태는 계약의 자유다.

### 3. 협상과 경쟁의 공정성

경쟁은 모자라는 것을 차지하려는 경쟁자들 간에 벌어지고 협상은 모자라는 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일이다. 이 협상에서 성공하면 경쟁의 승자다. 그러므로 협상이 공정해야 경쟁도 공정하다. 자유주의적 기준에서 공정한 협상은 모든 사람에게 계약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외부강제 없이 타결된 협상이다.

협상전략은 최소한의 자유포기로 원하는 목표를 얻으려 한다. 제로섬 상황의 협상에서 내게 좋은 협상전략은 항상 상대방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협상상대는 항상 나를 해치려 한다고 느낄 수 있으나 상대가 제시한 조건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도 없다. 그리고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경쟁자가 생긴 쪽은 협상에서 불리하고 상대방은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내게 유리한 전략은 나의 경쟁은 줄이고 협상 상대방의 경쟁은 늘리는 것이다. 새 경쟁자의 출현은 막아야 하고, 이미 있는 경쟁자는 쫓아내야 한다. 쫓아낼 수 없다면 경쟁자들끼리 단합이라도 해야 한다. 내 협상력을 강화해야 경쟁에서 이긴다.

PC의 OS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 A가 OS에 자신의 웹 브라우저를 끼워 팔면 경쟁사 B의 웹 브라우저 판로와 협상기회는 크게 위축된다. 기업 A는 웹 브라우저 협상에서 자신의 OS 고객이 B를 배제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압박하여 자신의 경쟁을 줄임으로써 웹 브라우저 협상력을 높인다. 이렇게 계약의 자유를 해치는 진입장벽은 협상과 경쟁

을 모두 불공정하게 만든다.

경쟁을 줄이는 단합은 공동협력이다. 단합으로 협상력을 강화하면 상대방은 불리해진다. A.스미드는 고용자들이 노동자보다 수가 적으므로 쉽게 단합하여 임금을 낮추는데 당시 영국의 법체계가 고용자의 단합은 허용하면서 노동자의 단합은 불허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mith, 1776). 그러나 만성적 실업이 고질이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자 간 단합보다는 노동자 간 경쟁이 임금하락에 더 많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영국은 과점기업 간 담합을 합법화했었는데 그 논거가 계약의 자유였다(Scherer, 1980). 합병처럼 시너지 효과도 없는 과점기업 간 담합은 가격 인상만을 겨냥하므로 현실의 경쟁법은 담합이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엄격하게 처벌한다. 담합의 피해자인 소비자가 반대하는 담합은 당사자 절충을 요구하는 자유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담합은 과점기업의 협상전략이고 소비자는 협상상대다. 소비자는 담합가격의 구매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담합은 소비자에게 외부강제가 아니다. 강요된 담합만 아니라면 자유주의는 담합을 허용해야 옳다. 담합은 과점기업 간 경쟁만 제한할 뿐 누구의 자유도 침탈하지 않는다.

담합을 처벌하는 경쟁법은 실용적 시각에서 자유주의 아닌 공리주의적 기준을 수용하였다. 역설적으로 반(反)자본주의적으로 알려진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은 자유주의 원칙에 맞게 계약의 자유를 허용한 결과다. 물론 노동법도 자유주의 기준을 수용했다기보다는 약자보호의 정의관을 따른 것이지만 경쟁법이 공리주의 기준에 따라 담합을 불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한 경쟁은 공정한 협상으로 승자를 결정하는 경쟁이다.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는 공정한 협상은 모든 경쟁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협상이다. 일부 경쟁자가 차별 배제당하여 협상이 불공정해지면 이 협상이 승자를 결정하는 경쟁도 불공정하다. 그러나 경쟁자 스스로 협상 참여를 자제하는 행위가 협상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협상 참여의 자발적 제한은 경쟁을 제한할지언정 불공정하게 이끌지는 않는다.

자유주의 3원칙을 따르더라도 환경보호, 안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개인 행동은 규제당한다.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부른다. 최저임금법, 경쟁법, 고용보호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기타사항 등은 협상에서 경쟁자들의 자유포기에 하한선을 둬으로써 경쟁에 시달리는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이 제한조치는 경쟁의 압력이 자유포기를 법정 하한선까지 밀어낼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적게 포기하고 원하던 것을 얻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더 많은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고 끝난 사람은 경쟁의 기회만 박탈당한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의 직장도 구하지 못한 실직자에게서 경쟁할 권리조차 박탈하므로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든다.

#### 4. 경쟁의 성과

공동협력에서 ‘더 나은 파트너’를 차지하려는 경쟁의 승자는 ‘더 나은 파트너’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이 명제는 참여와 이탈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의 논리적 귀결이다. 앞 III.1의 예에서 과다직능들이 선택받으려고 서로 자신의 몫을 더 많이 양보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희소직능의 소득은 8, 그리고 남아도는 직능의 소득은 2로 결정된다. 이렇게 희소직능이 과다직능으로부터 받아내는 초과소득 6은 그 본질이 D.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와 같다(Ricardo, 1821).<sup>2)</sup>

만약 정부가 경쟁을 금지하거나 과다직능 두 사람이 단합하면 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직능의 과부족과 무관하게 공동협력의 참여자는 각각 두 사람만 있을 때와 같은 소득 5, 그리고 개별 활동을 벌이는 사람은 소득 2를 얻는 결과로 끝난다. 단합할 경우 과다직능은 두 사람의 소득을 합한  $7(=5+2)$ 을 반분한 3.5씩 나누어 가질 수도 있다.

이 예에 한정하여 경쟁을 고찰하면 경쟁은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다. 그리고 경쟁이 결정한 분배에서 희소직능이 공동협력의 순소득을 차액지대로 독식하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비판적 시각으로 볼 때 공동협력의 자유를 제한하면 오히려 더 나을 듯도 싶다. 그러나 생산성 높은 새로운 협력모델의 개발 유인을 활성화하는 데는 경쟁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위의 예에서 초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 직능 B를 갖추고 개별 활동만을 펼치고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한 사람이 총 K 원의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2인1조의 공동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스스로 직능 A를 터득하여 협력을 시작하였다. 기별로 유량화 annualize한 투자비용을 k라고 하자.  $k=4$ 라면 직능 A가 공동협력을 만들고 참여하는데 드는 기별 비용은 개별 활동의 기회비용 2와 개발비용 4를 합한  $6(=2+4)$ 이다.

그런데 개발비는 이미 지출되어 다른 용도에 전용될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서 직능 B와 협력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에서는 기회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경쟁 상태의 내쉬협상해는 여전히 위와 같은 (5,5)이므로 직능 A는 개발비를 포함한 비용 6을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경쟁 없는 2인사회라면 개발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3인 이상이라도 B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협력모델 개발과 직능 A의 터득에 투자할 사람이 없다. 모든 개인은 소득 2를 얻는 개별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별 개발비용 k가 3보다 작다면, 개발 총비용은 5보다 작으므로 경쟁이 없더라도 비용을 회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자 A의 순소득은 개발에 기여한 바 없이 협력에 참여하는 과다직능 B보다 오히려 더 작다. 스스로 A를 터득하기보다 남이 터득하기를 기다리는 무임승차가 더 낫다. 만약 정부가 개발비용 k를 협상에서 기회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조치하면(Rawls, 1999, p.87) Nash협

2) 이 예에서 희소직능은 우량토지, 그리고 과다직능은 일반토지와 농부로 설정하면 직능 간 보수 차이는 차액지대로 설명된다.

상해는 각자의 순소득을  $(3-k/2)$ 로 결정하고 개발투자비용은  $k \leq 6$ 이면 회수된다. 그렇더라도 남이 개발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개발에 나설 특별한 유인은 없다.

경쟁이 협력 개발자에게 몰아주는 지대는 혁신 개발로 생산성을 높인 데 대한 포상이다. 만약 개발자 독식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포상을 금지하면 개발 유인은 약해진다. 계약의 자유는 경쟁을 낳는데 그 자유를 행사하는 단합은 경쟁을 제한한다. 경쟁법은 자유주의를 수용하여 계약의 자유와 경쟁을 허용하면서도 개발 유인 강화의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경쟁제한적 단합은 부정한다.

## 5. 우월적 지위와 그 남용

과다직능의 개인은 희소직능을 파트너로 삼으려는 경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자기 몫을 희소직능에 더 많이 내준다. 시장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는 공동협력에서 차액지대를 얻어내는 희소직능의 지위다. 과다직능 간 경쟁을 통하여 희소직능이 얻는 지대는 협상 쌍방의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그 규모가 크더라도 일방적 수탈은 아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운동장이 기울어진 경쟁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은 지대의 정당성을 의심한다. 타고난 재능에 바탕을 둔 희소직능이 경쟁을 유발하여 얻는 지대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명백한 부정의라고 주장한다(Rawls, 1999, pp.62-3).

공동협력에서 발생하는 과다직능 간 경쟁은 우월적 지위에 높은 지대를 허용함으로써 희소직능 개발 습득의 유인을 자극한다. 즉 자유경쟁은 이기적 개인행동이 자발적으로 희소직능의 부족을 해소하도록 이끈다. 그런데 우월적 지위의 직능인이 양적으로 늘어나면 그 우월성은 잠식당한다. 신규 라이벌의 등장을 다각적으로 방해해야 현재의 우월성은 계속 유지된다. 앞 3절에서 OS시장의 독점기업이 웹브라우저 판매시장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것이 좋은 예다. 이러한 부당한 진입장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표적 사례로서 경쟁법의 단속대상이다.

우월적 지위의 ‘갑질’은 또 다른 문제다. 협상 과정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과다직능은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는데 희소직능은 이후 실제 협력 과정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파트너들에게 계약보다 더 많은 자유 포기를 요구한다. 약자가 계약만료 이후 연장 재계약을 원한다면 명백히 현 계약의 위반인 강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에 호소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연장계약 포기로 잃는 손실보다 작다면 법적 보화 오히려 불리하다. 강자의 부당한 ‘갑질’을 약자가 거부하지 못한다.

계약 위반의 ‘갑질’은 분명히 부당하나 외형상으로는 피해자가 ‘갑질’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 약자의 공식적 이의 제기가 없으므로 ‘갑질’은 법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숨어버린다. ‘갑질’ 수용을 거부하고 떠날 권리를 가진 약자가 법적 보호를 마다하고 견디는 까닭은 ‘갑질’에도 불구하고 그 강자와 함께 계속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법적 보호는 이 허점 때문에 계약이행을 보장하지 못한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약자에게 연장 재계약을 놓치는 손실보다 충분히 더 큰 배상금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약자라도 강자의 ‘갑질’을 단호히 거부하고 배상금을 챙기면서 떠날 것이다. 물론 책정된 금액이 과다하거나 ‘갑질’이 없는데도 징벌적 배상을 노린 위계(僞計)를 꾸밀 수도 있다. 그러나 ‘갑질’만 없다면 배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우려는 기우다. 예컨대 입증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면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갑질’은 근절한다.

이미 협상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가 경쟁의 부담을 안으면 그 협상력은 더욱 약해진다. 경쟁이 다수의 사회적 약자에게 추가적 부담을 주는 구조는 노동시장과 독과점 상품시장의 협상에서 두드러진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정부는 해당 시장의 협상에 개입하여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조치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고용보호법, 그리고 경쟁법 등이 있다.

약자의 협상력을 돕는 규제는 부작용으로 임금이 더 낮아도 좋은 사람에게서 취업 기회를 빼앗고, ‘갑질’과 무관하게 노사가 합의한 비상상황의 추가 근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정리해고를 어렵게 한다. 강자의 협상력을 약화해도 효과는 같다. 고용주가 현재 고용 중인 정규직과의 공동협력을 중단할 자유를 제한하면 고용주의 협상력은 약화하고, 담합 금지는 과점기업의 가격 협상력을 약화한다.

앞 III.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치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까지 훼손한다. 제한하지 않아도 될 자유는 모두 허용하는 자유주의에 어긋난다. 사회적 약자가 처한 구조적 곤경은 사회복지제도의 강화로도 도울 수 있다. 계약의 자유는 공리주의적 기준으로만 제한하고 나머지 경쟁의 자유는 그대로 허용하면 개발 혁신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둔다.

협상력 보조는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자원과 인력을 고용에서 배제하므로 총생산도 그만큼 침체한다. 반면에 개발 혁신이 거듭되면 총생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그 수준은 협상력 보조 시의 소득분배를 감당하고도 남는다. 즉 사회적 약자들이 협상력 보조 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도록 보장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계약의 자유를 단합금지 정도로만 제한하고 협상력 보조의 제한은 모두 폐지하면서 사회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 6. 자유의 양도 불가능성과 공동협력

자유로운 공동협력은 자발적 자유포기의 결실인데 자유 가운데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포기하기로 계약한 자유가 포기할 수 없는 자유라면 그 계약은 무효다. 자신을 노예로 판매하는 행위는 많은 나라가 금지한다. 대리인 문제도 그 본질은 대리인의 일탈할 자유가 물리적으로 양도 불가능한 데서 비롯한다. 전자는 법체계가 규정한 양도불가능성(inalienability)이고 후자는 원래 주어진 물리적 속성이다.



법이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한 자유를 양도하는 계약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때로는 오히려 처벌대상이다. 그리고 물리적 양도불가능성은 대리인문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어렵게 만든다. 신앙 양심의 자유도 대표적인 양도불가능한 자유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양도 이행을 확인하기 어렵다.

물리적으로는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양도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자유주의적이 아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결권을 양도금지 대상으로 정하면 자신을 노예로 파는 계약은 원천 무효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임노동 계약도 노동자의 자결권을 양도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된다(Ellerman, 2005). 이 주장에 따르면 위계적 질서 아래 전개되는 시장 기업형 공동협력은 허용되지 말아야 하고 참여자들이 대등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조합형 협력만 가능하다. 사람 장기의 상업적 양도 등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사회도 적지 않다. 반면에 자유주의에 동조하여 자유의 양도 불가능성을 거부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 자유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Nozick, 1999)도 있고 종신 노동계약을 인정함으로써 자결권의 양도 불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Rothbard, 2009)도 있다.

공동협력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 일부를 포기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남들의 자유 포기로 내가 얻는 이익은 가지고 싶지만 내 자유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자유의 양도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여 챙길 것은 챙긴 다음 양도 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내 자유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이 강해진다. 이와 같은 소모적 분쟁을 막으려면 자유의 양도 가능성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으로는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양도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자유주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반(反)자유주의적 자유 제한은 현실 세계에 적지 않게 존재한다. 자유주의는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정의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반자유주의적이라고 해서 그 제한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반자유주의적 제한을 본질로 삼는 이념을 자유주의로 분류하는 혼란은 정리해야 한다. J.롤즈의 평등적 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반자유주의적 ‘자유주의’의 대표적 사례다.

## V. J.롤즈의 평등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인가?

### 1. J.롤즈의 정의론 개요

J.롤즈의 정의기준 제1조건은 개인 삶에 필수적인 기본자유(basic liberties)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 제2조건은 ‘기회의 공정평등(fair equality of opportunities)’과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이다. 전자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지위에 임용될 기회가 모든 개인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허용될 것

을 요구하고, 후자는 최소혜택집단(the least advantaged)의 삶의 기대치를 최대화하는 불평등은 정의롭다고 규정한다. 제2조건은 완전 평등주의를 완화하여 수용함으로써 제1조건의 자유주의에 평등 요소를 절묘하게 배합한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위 조건들은 서술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누린다. 제2조건을 위해 제1조건을 희생할 수 없고 ‘기회의 공정평등’은 차등원칙에 우선한다.

자유(제1조건)를 평등(제2조건)에 앞세우고 자유는 자유창달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된다고 설정(Rawls, 1999, p.214, 220)하기 때문에 J.롤즈의 정의기준은 일단 자유주의로 분류할 만하다. 그런데 그는 계약의 자유와 생산수단의 사유를 기본자유 목록에서 아예 배제한다(Rawls 1999, p.54). 그 결과 제2조건의 평등은 제1조건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자유시장적 공동협력의 기본인 계약의 자유와 생산수단의 사유보다 더 중요하다. J.롤즈의 정의는 자유주의에 평등 요소를 절묘하게 배합했다기보다는 시장형 공동협력의 자유를 내치고 평등을 앞세운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J.롤즈는 무지의 장막 뒤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자신이 최소혜택집단에 속할 사태를 우려하므로 모두 최소혜택집단을 우대하는 차등원칙에 합의하리라고 추론한다. 이에 대해 자신이 최소혜택집단에 속할 확률을 100%로 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합의할 리 없다는 비판(Harsanyi, 1976)도 있다. 저능아 한 명의 교육비보다 적은 돈으로 천재 10명을 교육하면 수억 민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때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그 돈을 저능아 교육에 써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할까?

J.롤즈는 I. 칸트의 ‘목적-수단’의 틀을 빌어서 인간을 목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모든 이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 이득은 포기해야 옳다는 데 동의할 것이고, 반대로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사람이나 불운한 사람의 삶을 외면하더라도 행운아들의 삶을 챙길 것(Rawls, 1999, p.157)으로 본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얻은 소득이라도 모든 이의 삶에 기여하도록 쓰이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다는 뜻이다.

제1조건에 따라 기본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면 기본자유는 재분배할 필요가 없다. 개인별 권위와 재부는 각자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더 강한 권위와 더 많은 재부는 자유의 가치를 더 크게 실현한다. 그러므로 권위와 재부는 사회정의에 맞게, 즉 제2조건에 부합하도록 재분배되어야 한다(Rawls, 1999, p.179).

사람들은 권위와 재부를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경쟁에서 이기는 동력은 각자의 능력이다. 우수한 재능을 타고난 개인이 양호한 교육 훈련 기회를 얻으면 좋은 능력을 갖춘다. 그런데 재능은 하늘이 점지하고 교육훈련의 기회는 부모가 준다. 이에 더하여 부유한 부모는 상당한 재부를 유산으로 물려주기까지 한다. 개인은 각자 능력의 핵심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타고난다.

좋은 능력을 갖춘 개인이 권위와 재부를 얻는 경쟁에서 승리하면 이를 이용하여 실현하는 자유의 가치도 그만큼 더 크다. J.롤즈는 개인 능력의 핵심이 우연히 타고나는 것이므로 자유의 가치를 각자 능력대로 누리는 체제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Rawls, 1999, p.63). 즉 혜택을 덜 받고 태어난 집단이 자유를 행사하는 데서 겪는 태생적 불리함을 제대로 보정해야 사회정의는 바로 선다. 개인 재능은 자신만이 아니라 덜 혜택을 받은 집단을 위해서도 써야 하고 차등원칙은 개인 재능이 보유자 아닌 사회 전체의 공유자산이라는 합의다(Rawls, 1999, p.87; 2001, p.76).

J.롤즈는 또 태생적 행운의 수혜자가 이 행운으로부터 정당하게 누릴 몫은 재능개발에 지출한 훈련 교육비용과 상대적 불운자들을 돕는 데 쓸 재산을 합한 정도뿐이라고 주장한다(Rawls, 1999, p.87). 즉 정당한 몫은 교육훈련과 불운자 지원에 모두 써야 하므로 수혜자는 그 행운에서 어떠한 사적 이득도 얻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기준은 재능개발의 유인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 2.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제2조건

J.롤즈는 제2조건을 실현할 방안으로 두 가지 재분배를 제안한다. 하나는 ‘기회의 공정평등’을 위한 매기 초의 자산재분배이고 다른 하나는 차등원칙 실현을 위한 매기 말의 소득재분배다. 그에 따르면 기본자유는 개인의 자기실현에 필수적인데 소득재분배에 기초한 ‘복지국가자본주의(welfare-state capitalism)’는 일반 시민의 기본자유 보장에 실패한다(Rawls, 2001, pp.137-8). 따라서 매기 초 생산자산과 인간자본을 고루 분산하는 대대적 재분배가 필요하다(Rawls, 1999, p.XV; 2001, p.139).

그가 이상으로 내세우는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는 매기 초 재분배로 생산자산과 인간자본의 소유를 ‘기회의 공정평등’에 맞게 대대적으로 분산시킨 다음에 경제 운용은 시장에 맡긴다(Rawls, 1999, p.XV; 2001, p.139). 이 재분배는 단순한 생계보조형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합당한 사회경제적 평등을 누리면서 각자의 일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대대적 자산재분배다(Rawls, 2001, p.139).

증여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과 조세 등은 사적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기회의 공정평등’을 실현하는 수단(Rawls, 2001, p.51.)이다. 그런데 증여 상속의 규율은 그 행위가 일어날 때나 가능한 규율로서 매기 초 재분배에 항상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가능한 수단은 조세인데 자산재분배를 소득세로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기회의 공정평등’ 실현에 걸맞는 재산세 규모는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몰수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인간자본의 평등재분배는 어렵지만 인간자본을 동원할 권위는 평등하게 배정할 수 있다. 능력에 과분한 권위적 지위에 배정된 개인의 서툰 업무 수행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그러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개인이 누릴 자기실현의 소중한 가치는 이 피해를 능가한다(Rawls, 1999, p.73)는 것이 J.롤즈의 생각이다.

권위의 재분배만으로는 인간자본의 평등재분배를 완결하지 못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을 완전하게 바로잡지는 못하므로 자산과 권위를 재분배한 뒤의 경쟁도 결과는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다. 차등원칙의 실현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 방안은 매기 말 소득 이전이다. 그는 시장경쟁으로는 개인의 기초수요 충족이나 적정 생활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최소혜택집단의 소득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재분배로 그 결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awls, 1999, pp.244-5).

차등원칙 실현의 재분배로 개인별 소득은 최종 확정되고 개인은 이 소득을 각자 소비와 저축에 배정한다. 이 개인별 저축의 결과로 결정되는 다음 기초 재부는 차등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공정평등은 다음 기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완전평등 지향적 자산재분배를 시행한다. 공정평등에 맞게 자산을 재분배해도 경쟁 결과가 차등원칙에 어긋나므로 다시 소득을 재분배하고, 그렇게 결정된 자산분배가 다시 공정평등에 어긋나므로 다시 재분배하는 일이 반복된다. 재분배로 공정평등을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므로 공정평등과 차등원칙은 상호부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 최소혜택집단의 삶을 악화시켜서 차등원칙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쟁이 낳은 불평등을 매기 대대적 재분배로 교정한다면, 경제활동의 유인이 시들어 결국 모두 가난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공정하게 평등해진 기회를 축소하고 최소혜택집단의 삶의 전망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만다.

많은 사람에게 차등원칙은 J.롤즈의 정의론 자체를 상징한다. 사적 유인을 무력화하는 평등원칙과는 달리 차등원칙은 평등원칙의 목표 가치는 승계하면서 그 결함을 해소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J.롤즈의 ‘기회의 공정평등’은 곧 평등원칙이고, 우선순위에서 차등원칙은 공정평등에 밀린다.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공정평등의 실현에 집중하므로 차등원칙은 주변화(marginalize)당한다. 그렇다고 해도 논리적 일관성을 잃는 것은 아니나 변두리로 밀려버린 차등원칙이 공정평등을 기조로 삼는 그의 정의론을 상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J.롤즈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정의의 실현 수단으로 내세움으로써 그의 정의론을 상징하는 차등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 3. J.롤즈적(的) 정의기준의 반(反)자유주의 특성

J.롤즈는 정의 원칙의 역할을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명기하는 것(The role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is to specify the fair terms of social cooperation)’으로 규정한다(Rawls 2001, p.7). 그에 따르면 사회적 협력은 첫째, 협력 참여자들이 적절하다고 수용한 공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둘째, 협력조건이 각 참여자가 이성적(reasonable)으로 수용할 만하고, 다른 참여자도 함께 수용할 정도로 공정해야 한다. 협력조건 바탕은 상호성이며, 각 참여자는 공인 규칙이 요구하는 역무를 수행하고 공식 합의한 기준에 따른 혜택을 수취한다. 그리고 셋째, 개별 참여자는 협력을 통하여

자신의 합리적(rational) 이익을 추구한다(Rawls, 2001, p.6).

개인행동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수준이면 합리적, 그리고 주변의 수용성까지를 배려하면 이성적이다(Rawls, 2001, pp.6-7).<sup>3)</sup> 사회적 협력의 의무 분담과 성과 분배는 J.롤즈의 정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될 때 공정(Rawls, 2001, p.7)한데 당사자들이 계약의 자유를 행사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한 협력조건이 이 정의 원칙에 반드시 부합한다는 보장은 없다.

J.롤즈는 개인재산은 자유인의 도덕 역량의 개발과 행사에 필요한 독립과 자존 self-respect에 꼭 필요한 물질 기반이지만, 생산자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Rawls, 2001, p.114). 즉 기본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계약의 자유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자발적 자유 절제에 의한 공동협력은 자유와 사적 소유가 큰 폭으로 허용되어야 가능한데 J.롤즈의 정의 원칙은 기본자유를 수호를 내세워 계약의 자유와 사적 소유를 오히려 제한한다. 자기실현에 기본자유를 강조하는 면은 자유주의적이거나 자율적 공동협력을 제한하는 면은 반(反)자유주의적이다.

자유로운 공동협력에서 참여와 이탈의 자유는 기본이다. 이 자유 덕분에 사회적 협력은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의 부담과 몫에 동의할 때 한하여 성사된다. 개인은 원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부담을 늘리고 몫을 줄이겠다고 제안할 권리를 누린다. 원하는 협력을 향한 경쟁은 이 권리행사의 결과다.

그런데 J.롤즈는 경쟁을 이성적이지 않다고 본다. 부족이라고 하는 ‘우연적 행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합리적이지는 하나 이성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sup>4)</sup> J.롤즈의 시각에서 개인 간 협상력의 차이는 상호성에 어긋나는 우연일 뿐이고, 우연히 얻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얻는 높은 보수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Rawls, 1999, p63). 즉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부도덕하다.

J.롤즈는 기울어진 운동장 덕분에 우연적 행운을 독점한 소수 행운아가 정의롭지 못한 시장경쟁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고 본다. 그러나 우연적 행운이 시장경쟁을 부정의로 내모는 것이 아니고 부족이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스스로 행운으로 군림하는 것이다. 경쟁을 허용하는 한 앞 절의 상호모순적 재분배는 끝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 수요자 간에 서로 사려고 더 높은 가격을 제의하는 호가경쟁(bidding competition)이 발생한다. 이 상품의 생산자는 자연스럽게

3) ‘이성적’과 ‘합리적’을 구분하자는 제안의 원전은 W. M. Sibley, “The Rational Versus the Reasonable,”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62, No. 4 (Oct. 1953)이다. 그는 557-558쪽에서 “Reasonableness thus requires impartiality, “objectivity”; it expresses itself in the notion of equity.”라고 서술하였다.

4) Rawls (2001) p.7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some have a superior political power or are placed in more fortunate circumstances, ... it may be rational for those so placed to take advantage of their situation. ... given their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their proposal is perfectly rational, but unreasonable all the same.”

가격협상에서 유리해지는데, J.롤즈에 따르면 이 행운을 이용하여 가격을 올리고 생산을 늘려 돈을 버는 행위는 합리적이지언정 이성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하자면 널리 알려진 수요공급의 법칙의 배경인 시장경쟁은 비이성적이고 따라서 정의롭지 못하다.

만약 일자리가 남아돌아 모자라는 것이 인력이라면 이번에는 기업 간 채용 경쟁이 거꾸로 임금을 올리고 근로조건도 좋게 만든다. 노동자들의 형편은 좋아지나 한계기업들은 도산의 위기에 내몰린다. 계약과 거래의 자유를 허용하면 부족한 것을 서로 얻겠다고 나서는 경쟁은 자연스레 발생한다. 일자리가 모자라면 구직난과 박봉의 중노동이지만 인력이 모자라면 구인난과 고인건비인데 이 모든 것이 경쟁의 결과다.

J.롤즈가 말하는 우연적 행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수량적으로 충분치 못할 때 찾아온다. 이 우연을 행운으로 만드는 동력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 간 경쟁이다. 그러므로 우연적 행운에 대한 보상이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면 바로 시장경쟁의 도덕적 근거가 원천적으로 무너진다. 상품이 모자랄 때 값을 더 내겠다고 고객에게 파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당하므로 수요공급의 법칙 자체가 부도덕해진다.

또 J.롤즈는 강요나 조작 없이 개인들의 목표와 결핍이 자생적으로 이상선(善)(ideal good)과 조화롭게 일치할 일관성의 조건을 정의하는 것을 정의론의 이론적 역할로 본다(Rawls, 1999, p.249.).<sup>5)</sup> 우연적 행운을 보상하지 않는 J.롤즈의 이상선은 우연도 수용하는 당사자 자율의 이상선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우연적 행운을 수용하는 자유주의의 당사자 자율에서 J.롤즈의 이상선의 요구는 강요나 조작과 다를 바 없다. 즉 J.롤즈의 정의기준은 반(反)자유주의적이다.

개인의 자기실현에는 기본자유 행사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 즉 권위와 재부도 필요하고 주변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 J.롤즈의 정의는 자산재분배를 통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권위와 재부를 제공하고, 자유주의의 정의는 공동협력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개별성 실현, 즉 자기실현의 전망을 확대한다. 권위와 재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는 수단인데 J.롤즈는 이것을 사회가 배정하고 자유주의는 각자 자기실현을 도모하면서 스스로 얻도록 허용한다. 전자의 도움은 일방적 흐름이고 후자는 도움을 주고받는 쌍방 흐름이다. J.롤즈의 정의와 자유주의는 이처럼 서로 다르다.

5) 해당 본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Rather a society in which all can achieve their complete good, or in which there are no conflicting demands and the wants of all fit together without coercion into a harmonious plan of activity, is a society in a certain sense beyond justice. It has eliminated the occasions when the appeal to the principles of right and justice is necessary. I am not concerned with this ideal case, however desirable it may be. We should note though that even here the theory of justice has an important theoretical role; it def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spontaneous coherence of the aims and wants of individuals is neither coerced nor contrived but expresses a proper harmony consistent with the ideal good."

## VI. 맺음말 - 자유주의적 공정경쟁의 복지국가

자유주의는 외부강제의 자유만 금지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독행동이건 공동협력이건 모두 그대로 허용하는 이념이다. 자유로운 공동협력은 개인이 자유포기를 주고받으면서 각자 원하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지능적 자유 행사다. 자유주의의 정의기준은 충돌하기 쉬운 여러 개별성이 자발적 절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충돌 없는 공존에 합의하도록 이끈다. 시장에서는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기로 끝날 뿐 개별성 간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장의 공동협력에서는 협상을 통한 공존이 항상 가능하다.

자유주의가 아닌 정의기준을 믿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자율이라도 자신들이 믿는 정의기준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은 복수의 개인 간 집단행동의 약속이므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면 집단행동을 특정 정의에 부합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동성애 금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향응 제공 금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보호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그리고 아동노동 금지 등은 이러한 자유 규제의 대표적 예다.

공동협력의 자유는 참여와 이탈의 자유를 토대로 하는데 여기에 협상전략 선택의 자유를 없으면 경쟁의 자유가 된다. 자유는 경쟁을 촉발하나 협상 전략으로 단합을 허용한다. 단합금지는 경쟁이 주는 혁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리주의적 판단이다. 시장경쟁에서 밀리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하여 재분배로 경쟁의 결과를 조정하거나 약자의 협상력을 보강, 또는 강자의 협상력을 약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경쟁은 협력 파트너로 인기가 높은 개인에게 리카르도적(的) 지대를 몰아준다. J.롤즈는 우연적 행운에 불과한 우월적 지위의 지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자유경쟁은 이성적이지 않고 따라서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주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공동협력도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은 갖가지 규제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규제들은 공통되게 협상력 강한 측의 횡포가 공동협력의 정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서로 경쟁해야 하는 약자들은 강자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유를 포기하는데 그 하한선을 정의의 이름으로 강요한다. 그 결과 약자의 몫은 좀 높게 보장할 수 있지만, 이 보장된 몫은 누리지도 못하면서 경쟁에서 탈락하여 계속 경쟁할 자유조차 박탈당하는 사람이 생긴다. 경쟁제한은 이처럼 근시안적이다. 그리고 근시안적 경쟁제한은 사람들의 의욕을 혁신 창달 아닌 무임승차로 몰고 간다.

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면서도 단합을 통한 경쟁제한도 허용한다. 경쟁의 공리주의적 성과를 확대하려면 자유는 창달하면서 단합은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진입장벽은 자유경쟁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 요인이다. 약

자를 위한 법적 보호를 피해 가는 ‘갑질’을 막으려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쟁으로 협상력을 잃는 약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약자의 일부를 경쟁에서 배제하는 불공정경쟁을 초래한다.

J.롤즈의 평등적 자유주의는 경쟁을 부도덕하다고 규정하고 정의의 실현에는 시장경쟁이 실현하는 소득분배를 큰 폭의 자산 및 소득재분배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는다. 다른 많은 정의론자들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상력 없는 약자들을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를 온전하게 허용하여 경쟁을 창달한 다음 조세 보조금 정책으로 협상력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유주의적 공정경쟁의 복지국가’의 방식이 경쟁의 부작용을 시정하면서 약자들을 돕는 데 더 효과적이다.



## ■참 고 문 헌

- 1) 오병선,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J.S. Mill's Theory of Liberty and The Harm Principle*), 2019.
- 2) Berlin, I., "Two Concepts of Liberty," 1958. "TWO CONCEPTS OF LIBERTY,"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 118-172.
- 3) Ellerman, D.P., "Translatio versus Concessio: Retrieving the Debate about Contracts of Alien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oday's Employment Contract," *Politics & Society*. 33 (3), 2005, 449-480.
- 4) Harsanyi, J.C., "A Critique of John Rawls's Theory," in *Essays on Ethics, Social Behavior, and Scientific Explanantion*, D. Reidel, 1976.
- 5) Hayek, F.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6) -----, *Law, Liberty, and Legislation*, Vol.I, 1973.
- 7) Hobbes, T., *Leviathan*, 1651.
- 8) Mill, J.S., *On Liberty*, 1859, APPLETON-CENTURY-CROFTS
- 9)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Blackwell 1999. p.331
- 10) Rawls, J., *The Basic Liberties and Their Priority*,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April 10, 1981
- 11) -----,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12) -----, *Justice as Fairness - A Re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13) Ricardo, 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3<sup>rd</sup> edition. 1821,
- 14) Rothbard, M. N., *Man, Economy, and State with Power and Markets*, 2nd ed., PDF, 2009.
- 15) Rousseau, J.J., *The Social Contract, or Principles of Political Right*, 1762, G.D.H. Cole 역.
- 16) Scherer, F. M.,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2<sup>nd</sup> ed. 1980.
- 17) Sibley, W. M., "The Rational Versus the Reasonable,"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62, No. 4 (Oct. 1953)
- 18)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 19) Williamson, T. and M. O'Neill,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the Demands of Justice," *LIVING REVIEWS IN DEMOCRACY*, September 2009.